

(판결) 보상대상에 포함여부도 재결신청의 청구 대상이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2309]

▣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협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로 정하고 있을 뿐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으로 협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조항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으로 손실보상협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결을 통해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 과 공익사업법 제26조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